

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를 하였으나,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대상자		주 소	발급기한	지참물	비고
	성명	생년월일				
1	신*주	2000.09.18	검단로540번길 59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2	김*서	2000.09.01	완정로65번안길 10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3	이*지	2000.09.26	완정로34번길 47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4	나*일	2000.09.21	완정로34번길 20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5	김*영	2000.09.03	완정로34번길 20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6	윤*솔	2000.09.20	완정로34번길 9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7	양*민	2000.09.26	완정로34번길 9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8	김*진	2000.09.01	완정로34번길 29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9	차*힘	2000.09.15	완정로34번길 29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10	장*빈	2000.09.08	청마로51번안길 11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11	김*혜	2000.09.18	청마로 92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12	이*석	2000.09.15	청마로52번길 5	2018.09.30	학생증 증명사진1매	

발급기한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의3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(☎ 032-560-3356)

2017년 9월 13일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장

